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3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8.

발 의 자:김용판·김성원·송언석

권영세 • 권성동 • 김영식

최춘식 · 추경호 · 한기호

김선교 • 태영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금융 분야에 일명 마이데이터(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 인하고 직접 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)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 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'전송요구권'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(안 제11조의2 신설).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) ① 개인인 행정정보주체(처리된행정정보 및 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행정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는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(이하 "개인행정정보"라 한다)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행정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행정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행정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주체 본인이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을 요구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개인행정정보의 정확성

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행정정 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⑤ 개인인 행정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행정기관등의 장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
- 2.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행정정보
- 3.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
- 4.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제3항에 따라 개인행정정보를 제공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행정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행정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⑦ 개인인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·중단할 수 있다.
- ⑨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대리인에게

하게 할 수 있다.

①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, 제3항에 따른 전송의기한 및 방법,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,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·중단의 방법, 제9항에 따른 대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개인행정정보의 전송 요구) ① 개인인 행정정보주체 (처리된 행정정보 및 이와 쉽 게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행정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(이하 "개인행정정보"라 한다)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행정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인 행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관련

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행정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 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 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주체 본인이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해당 개인행정정 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행정정보를 전송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개인인 행정정보주체가 제1 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행정기관등의 장으로서 전송 요구를 받는 자
- 2.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행정정보
- 3.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행정정 보를 제공받는 자
- 4.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

<u>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</u> <u>기</u>
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제3항에 따라 개인행정정보 를 제공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 구하고 개인행정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행정주체 본 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 다.
- ⑦ 개인인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수 있다.
-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행정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수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·중단할 수 있다.
- ⑨ 행정정보주체는 제1항 및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대리

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①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,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, 제7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,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,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・중단의 방법, 제9항에 따른 대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